

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4. 7. 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지역교통과)

1.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제1호 및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노상주차장(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노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)을 삼입하고,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(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의 영업위반행위)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(책임보험가입의 위반사항)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재원조성에 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제1호 및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,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제1호에 삼입
-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
 - 삭제(안 제2조 제6호)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
 - 삭제(안 제2조 제7호)

3. 근거법령

-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

4. 개정조례 (안) : 따로붙임.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.

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 “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” 다음에 “노상주차장 및”을 삽입하고,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6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조(생략)</p> <p>1.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<u>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</u></p> <p>2~5(생략)</p> <p>6. <u>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</u></p> <p>7. <u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</u></p> <p>8. <u>기타잡수입</u></p>	<p>제2조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<u>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</u></p> <p>2~5(현행과 같음)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6. <u>기타잡수입</u></p>